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40호, 2026. 2. 10. 공포, 2026. 8. 11. 시행) 및 2025. 11. 21.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 등에 따라 시행령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제2항, 제6조의7제5항)

- 1) ‘주요 원재료’에 한정된 연동제 관련 서면 기재사항을 ‘주요 에너지’까지 포함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 2)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의 사업 내용에 에너지 비용의 정보 제공 및 기준 지표 개발 지원을 추가함.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예외사유 삭제(안 제8조제1항)

다.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의무의 예외로 규정(안 제8조제2항)

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안 제10조의2제2항)

마.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에 대해 추가 벌점 경감 부여(안 별표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25. ~ 5.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원재료”를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가격”을 각각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으로 한다.

제6조의7제5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의 정보 제공 및 기준 지표 개발 지원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제4호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로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2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제3호가목1)가) 및 나)를 각각 나) 및 다)로 하고, 같은 1)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1) 나)(중전의 가)) 중 “이상”을 “이상 100% 미만”으로 한다.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100%인 경우: 2.5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생략)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 -----.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1. (현행과 같음)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2. ----- -----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3. (현행과 같음)
4. 주요 원재료 <u>가격</u> 의 기준 지표	4. ----- <u>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u> -----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5. (현행과 같음)
6. 주요 원재료 <u>가격</u> 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6. ----- <u>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u> -----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7.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⑤ -----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⑥·⑦ (생략)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보증)

① 법 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3.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

-----.

1. ~ 5. (현행과 같음)

6.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의 정보 제공 및 기준 지표 개발 지원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보증)

<삭제>

<u>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u> <u><신 설></u> ② ~ ⑤ (생략)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2. 삭제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 ----- -----.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

3.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4. 삭제 ③ ~ ⑥ (생략) [별표 3] 별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3. 별점의 경감·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별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 설></u>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을 사용한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2점 나)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을 사용한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 1점 2) ~ 10) (생략)	<u><삭 제></u> ③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을 사용한 비율이 100%인 경우: 2.5점 나) ----- ----- <u>이상 100% 미만</u> ----- 다) ----- ----- 2) ~ 10)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946